

제152회 거창군의회의회

<임시회>

# 조례안상정

(조례 4건)

거창군



--- 목 차 ---

의 안 번 호	건 명	페이지
2008 ~ 39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안	1
2008 ~ 40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7
2008 ~ 41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08 ~ 42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3



##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안

의안 번호	2008 ~ 39
----------	-----------

제출연월일	2008. 10. 2.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정이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1010비전 실천 및 우리군의 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효과적인 기업유치와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나. 기업사랑 및 환경조성에 관한 시책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 1) 기업사랑운동 추진 및 환경조성(안 제4조)
- 2) 기업사랑 민간단체 지원(안 제5조)
- 3) 최고경영인상 및 최고근로인상 시상(안 제6조, 제7조)
- 4) 군정 홍보매체 활용 기업홍보(안 제8조)
- 5) 중요한 협약체결 시 군수실 등 편의제공(안 제9조)
- 6) 기업애로상담관 지정·운영(안 제10조)

다.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시책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

- 1) 유치기업이 공유재산 사용을 희망할 경우 우선 지원(안 제11조)
- 2) 산업시설용지 지원(안 제12조)
  -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 또는 장기대부
  - 개별공시지가로 재산평정, 대부료는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10
- 3) 대부료 면제(안 제13조)
  - 원자재 100분의 60 이상을 관내에서 조달하여 공동 생산·전시·판매하는 경우에는 군의회 동의를 받아 면제
- 4) 대부료 이차지원(안 제14조)
  - 군이 조성한 산업시설용지 또는 공유재산인 공장용지, 임대산업 단지에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5년간 대부료의 이차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5) 산업시설용지, 대부료 면제, 대부료 이차보전의 지원기준 규정(안 제15조)
- 6) 관내 기업제품 우선구매, 우수제품 발굴·홍보, 시장개척 등 판로지원(안 제16조)

- 7) 공산품전시관 설치·운영(안 제17조)
- 8) 해외품질규격인정 컨설팅비용 일부지원(안 제18조)
- 9) 국내 전시회(박람회) 참가비용 일부지원(안 제19조)
- 10) 군 법률고문변호사를 활용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제공(안 제20조)
- 11) 신규산업단지 연접마을 주민숙원사업 지원(안 제21조)

**라.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시책을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 1) 노동단체의 체육, 문화활동비용 일부지원(안 제22조)
- 2)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안 제23조)
- 3) 근로자 주거지원(안 제24조)
  - 군내 이주 근로자 주택매입 또는 전세 등 알선
  - 10가구 이상 사원주택 집단건립 시 부지 알선, 진입로 개설, 가로등 설치 등 지원, 부지매입비 100분의30 지원

**마. 각종 보조금의 취소 및 반환 규정을 둠(안 제25조)**

**바. 보조금 집행은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함(안 제26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근로기준법」 제2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5조
-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8조, 제32조, 제39조
-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2조, 제4조, 제14조

나. 예산조치 : 200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33,640천원)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경제과 지역경제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08. 9. 3. ~ 9. 22.) 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사랑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효과적인 기업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제조업과 관광·레저산업을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유치"란 군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의 본사나 공장을 군 관할 구역으로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 근무하고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6. "이노비즈기업"이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기업사랑운동의 범군민적 확산과 기업인이 예우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및 효과적인 기업유치와 건전한 기업활동 지원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장 기업사랑 환경조성

제4조(기업사랑운동 추진 및 환경조성) ① 군수는 기업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등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하는 등 기업사랑운동을 전개하고, 유관 기관·단체 및 군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추진함으로써 기업이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업사랑운동 및 기업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군민과 함께하는 기업인의 날, 근로자의 날 행사
2. 기업제품 전시회 및 기업문화축제 행사
3. 그밖에 기업이 요청하는 행사 참여 및 지원

제5조(기업사랑 민간단체 지원) 군수는 유관기관·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민간주도의 기업사랑운동을 확산하기 위하여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기업사랑 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최고경영인상) ① 군수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기업인을 발굴하여 거창군최고경영인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상인원은 군수가 정하며, 군민의 날에 시상한다.

③ 대상자는 관내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인 기업의 대표자로 하며, 거창군투자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7조(최고근로인상) ① 군수는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면서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품질개선 및 기술개발, 노사화합, 사회공헌 활동 등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한 우수근로자를 발굴하여 거창군최고근로인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상인원은 군수가 정하며, 군민의 날에 시상한다.

③ 대상자는 관내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기업의 대표자가 추천한 근로자로 하며, 거창군투자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8조(기업홍보) 군수는 군홈페이지, 군정소식지 등 군정 홍보매체에 관내 기업의 제품, 기업인, 모범근로자, 기업소식 등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한다.

제9조(군수실 등 편의제공) 군수는 관내 기업이 중요한 협약체결을 할 경우에는 군수실 및 군이 보유한 인력·장비·기술 등 편의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기업애로상담관 지정) ① 군수는 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하여 기업 애로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을 두며, 상담관은 기업유치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② 상담관은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유관기관에 협조요청 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법의 규제완화가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제도개선 사항으로 건의하여야 한다.

### 제3장 기업활동 촉진 지원

제11조(공유재산 지원) 유치기업이 공유재산의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산업시설용지 지원)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의 본사나 공장을 군이 조성한 산업시설용지 안에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② 군이 토지를 기업에 대부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은 50년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대부료는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계산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재산 평정가격은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제13조(대부료의 면제)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이란, 원자재의 100분의 60 이상을 관내에서 조달하여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 제품을 말하며, 이 경우 군과 대부계약한 토지의 대부료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대부료 이차지원) ① 군수는 유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납부한 경우에는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5년간 대부료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조성한 산업시설용지 또는 공유재산인 공장용지에 입주하면서 군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임대산업단지에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대부료이자 보조금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기준) 제12조제1항 및 제13조, 제14조의 지원은 이노비즈기업 또는 투자금액이 15억원 이상 이거나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제16조(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① 군수는 군의 실·과·단·사업소·읍면에서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관내 기업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중소기업의 수출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우수 제품을 발굴·홍보하고 국내·외 시장개척 등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거창군최고경영인상을 수상한 기업에 대하여는 구매 및 판로 지원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공산품전시관 운영) ① 군수는 관내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에 전시시설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시물품에 대한 질서유지와 전시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제품을 전시하도록 한다.

1. 신규유치기업
2. 신제품 생산기업
3. 유망 중소기업
4. 그 밖의 관내 기업

제18조(해외품질규격인정 지원) ① 군수는 중소기업의 품질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관내 중소기업이 해외품질규격 인증을 받는 경우에 컨설팅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금액과 지원범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하고, 거창군최고경영인상을 수상한 기업을 우선하여 지원하며, 신청 및 정산은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9조(국내 전시회참가 지원) ① 군수는 중소기업이 다른 기관, 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전액 해당 기업체 부담으로 국내 전시회(박람회를 포함한다)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참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부스(조립, 부스 2개)를 기준으로 하며, 부스임차비의 100분의 80을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2백만원 내로 한다.
2. 거창군최고경영인상을 수상한 기업에 대하여는 지원한도액을 3백만원 내로 한다.

③ 제1항의 지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이고, 신청일 현재 관내에 소재하며,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기업

2. 기업별 지원은 연 1회로 하고, 신청기업이 지원 예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지원횟수가 적은 기업을 우선
3.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시(박람회)참가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시회 참가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전시(박람회)참가 보조금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제20조(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군수는 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의욕고취와 개발된 기술의 자산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군 법률고문변호사로 하여금 산업재산권 등에 대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21조(산업단지 연접마을 지원) 군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신규조성 산업단지와 연접한 마을의 주민 다수가 희망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장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

제22조(노동단체 지원) 군수는 건전한 노동단체가 노사화합과 근로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체육·문화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① 군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와 산업평화 정착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중소기업의 근로자 자녀 중 근면하고 성실한 학생을 거창군근로자 자녀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생의 자격 및 인원, 장학금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학생은 추천마감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다만, 고등학생은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2. 장학생 인원과 장학금의 금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다.

3. 학교, 단체, 기업 또는 군의 다른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은 그 금액을 공제한다.

③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생신청서를 노동조합이 구성된 기업은 노동조합 대표에게, 구성되지 않은 기업은 사용자 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학생신청서를 접수한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대표는 장학생으로서 자격유무를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장학생 추천서에 장학생신청서와 근로자의 재직증명서를 붙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④ 장학생은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거창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1. 영세하여 근로자 자녀 학비지원이 곤란한 기업체
2. 근로자의 보수 및 재산정도

제24조(근로자 주거지원) ① 군수는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군내로 이주하는 근로자의 주택매입 또는 전세 등을 알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업에서 10가구 이상의 사원주택을 집단으로 건립할 경우에는 건립부지의 알선 및 진입도로 개설, 가로등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부지매입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장 보칙

제25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군수는 각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기업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등의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2. 공장시설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할 경우
  - 4. 공장시설을 준공한 후 2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않은 경우
  - 5. 그 밖에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6조(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 장학생추천서

### □ 회사 및 근로자 기본사항

회 사		근 로 자	
회 사 명		소속부서	
주 소		성 명	
업 종 명		주 소	
근로자수		연 락 처	자 택 : 휴대폰 :

### □ 확 인 내 용

근로자 근무기간	다른 장학금 수혜 여부	산업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거창군수 이상의 표창여부	비 고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직위		성명	(인)

위 학생을 200 년도 거창군근로자자녀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200 년 월 일

추천자 :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대표 (인)

붙임 : 근로자의 재직증명서 1부

거창군수 귀하



##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안

의안 번호	2008 ~ 40
----------	-----------

제출연월일	2008. 10. 2.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정이유

거창군과 학교법인 한국폴리텍과 체결된 한국폴리텍Ⅶ대학 거창캠퍼스 무상 양도·양수에 관한 협약서의 내용을 준수하고, 승강기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통한 승강기산업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육발전을 위하여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을 지원하고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나. 재산출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한국폴리텍Ⅶ대학 거창캠퍼스를 무상증여 조건에 따라 대학에 무상양여
-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사업은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 대학은 군 출연재산에 대해 교육용 또는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의 관리

다. 대학에 대한 공유재산의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대학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 까지 군수에게 제출, 필요한 경우 수시 제출

마. 출연재산과 관련한 보고 및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군비 출연과 관련한 운영상황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와 소속공무원의 검사 실시 등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고등교육법」 제7조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 및 제40조

나. 예산조치 :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15억원)

다. 합 의 :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라. 그 밖에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2008. 9. 23 ~ 10. 2) 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승강기산업 기술인력의 교육, 훈련 및 양성을 위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강기산업”이란 일정한 승강로를 통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이동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를 생산·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기술혁신지원기관”이란 승강기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기관, 대학, 민간연구소를 말한다.
4. “산·학·연·관 협력”이란 기업, 대학, 기술혁신지원기관, 도, 군 및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5. “교육용 기본재산”이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5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사, 교지, 교원을 말한다.

제3조(재산출연 등) ① 군수는 승강기산업 수요에 따른 기술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으로부터 무상증여 받은 한국폴리텍Ⅶ대학 거창캠퍼스를 무상증여 조건에 따라 대학에 무상양여한다.

② 군수는 대학으로 하여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및 「고등교육법」 제7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1. 승강기산업 기술인력의 교육, 훈련 및 양성
2. 승강기산업 기술연구장비·시설의 확충 및 활용 촉진
3. 승강기산업 연관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양성체계 구축
4. 산·학·연·관 협력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력 양성

③ 대학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교육용 기본재산 또는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군수는 대학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대학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과 예산)** ① 대학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보고 및 검사)** ① 군수는 출연금 운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대학에 요구하거나 군비의 출연과 관련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대학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8 ~ 41
----------	-----------

제출연월일	2008. 10. 2.
제 출 자	거창군수

### 1. 개정이유

- 국내·외 투자사업 및 기업유치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 상위법령 개정 및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개선코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국내·외 투자사업 및 기업유치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근거 마련

- “기반시설” 용어의 뜻을 규정함 (안 제2조제16호 신설)
- 기반시설 지원근거 마련 (안 제21조의2 신설)

####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조문번호 변경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8호의2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안 제2조제11호)
- 「건축법」 제18조 → 「건축법」 제22조 (안 제2조제13호다목)
- 「지방자치법」 제133조 → 「지방자치법」 제142조 (안 제6조제1항)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조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 (안 제14조제4항)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5항 및 같은 항 제2호 내지 제5호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7항 (안 제2조제5호 및 제15조의2제2항제2호)

#### 다. 인용하는 관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함

- 복합화물터미널사업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안 제2조제11호)
-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 재산세 (안 제9조)
- 산업자원부장관 → 지식경제부장관 (안 제12조제2항)
- 지방산업단지 → 일반산업단지(안 제18조제1항제1호)
- 지방세 징수의 예 →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안 제23조의1제2항)

#### 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3조제6항)
- 위원회의 위원 수당 지급규정을 정비함 (안 제4조)

- 다.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함
-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안 제2조)
  - 기타 → 그 밖에(그 밖의)  
(안 제3조제5항제4호, 제6조제2항제4호, 제14조제4항, 제23조의1제 1항제2호)
  - (~의 규정에) 의한(다)(의하여,의거) → (~에)따른(다)(따라) (안 제2조 제11호·제12호·제13호다목·제15호, 제6조제1항·제3항, 제8조제3항, 제11조, 제12조제2항·제3항, 제12조의2, 제13조제1항·제2항·제3항, 제14조제2항·제3항·제4항, 제15조제2항, 제15조의2제2항, 제19조제2항·제3항, 제20조제2항·제3항, 제20조의2,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3조의1제2항)
  - 각 목1 → 각 목의 어느 하나 (안 제2조제13호)
  - 다음의 용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안 제6조제2항)
  - 각 호의1(과) →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안 제8조제3항, 제18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3조의1제1항)
  - 새로이 → 새로  
(안 제2조제13호가목, 제8조제3항제1호·제2호, 제18조제3항제2호)
  - 계리(계상) → 계산(반영) (안 제2조제13호나목, 제6조제1항, 제23조제3항)
  - 득하여 → 받아 (안 제2조제13호다목)
  - 당해(상당) → 해당  
(안 제2조제15호, 제5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2항·제4항)
  - 인 → 명 (안 제3조제2항·제4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20조제3항)
  - 이내 → 내 (안 제3조제2항, 제15조의2제2항제1호·제2호, 제21조제2항, 제23조의1제1항제4호·제5호)
  - 부의하는 → 회의에 부치는 (안 제3조제5항제4호)
  - 매회계연도마다 → 회계연도마다 (안 제6조제1항)
  - 때 → 경우 (안 제6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5조의2제2항제1호, 제18조제1항, 제20조제2항·제3항, 제20조의2, 제23조제1항, 제23조의1제1항, 제23조의1제1항제2호·제3호·제6호)
  - ~에 한하여(한한다) → ~만을 (말한다) (안 제8조제3항, 제12조제2항)
  - 불(이상) → 달러 (이상) (안 제8조제3항제1호·제2호·제3호, 제22조제2항제1호)

- 「~조례」가 정하는 → 「~조례」로 정하는 (안 제9조, 제10조)
- ~에 정하는 → ~으로 정하는 (안 제23조의1제1항제1호)
- % → 퍼센트  
(안 제12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
- 없는 한 → 없으면 (안 제12조제3항, 제19조제2항)
- 내지 → 부터 ~ 까지 (안 제12조의2, 제19조제3항, 제23조제1항)
- 월 기간(범위) 내(안) → 개월 내(안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 범위안 → 범위 내 (안 제14조제2항)
- 개시 → 시작 (안 제15조제2항, 제23조의1제1항제1호)
- 연도로부터 → 연도부터 (안 제15조제2항)
- 1만평 → 3만3천 제곱미터 (안 제18조제2항)
- 이를 도지사(예산)에게(에) → 도지사(예산)에게(에) (안 제23조제1항제3항)
- 아니한 때 → 았은 경우 (안 제23조의1제1항제4호·제5호)
- 현저히 → 뚜렷이 (안 제23조의1제1항제6호)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3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8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항
-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
-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및 「건축법」 제22조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
- (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
- (8)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7조 및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

나. 예산조치 : 투자유치 기반시설 사업비(09년 20억원)

#### 다.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08. 7. 9 ~ 7. 29) 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다음 각호와 같다”를 “다음과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2조제5항”을 “제2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복합화물 터미널사업”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및 제12호 중 “(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본문 중 “각 목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가목 중 “새로이”를 “새로”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나목 중 “계리”를 “계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다목 본문 중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2조에 따른”으로, “득하여”를 “받아”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10인이내”를 “10명 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4호의 “기타”를 “그 밖에”로, “부외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의 제목 및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수당 등은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 제142조에 따라”로, “매회계연도마다”를 “회계연도마다”로, “계상”을 “반영”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다음의 용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4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당”을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에 한한다”를 “만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 및 제3호 중 “불”을 각각 “달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새로이”를 각각 “새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사업외”를 “사업 외”로, “50명이상”을 “50명 이상”으로 한다.

제9조 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거창군세 감면조례」가”를 “「거창군세 감면조례」로”로 한다.

제10조 중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를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로 한다.

제11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로, ”토지등을“을 ”토지 등을“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 안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의한”을 “따른”으로, “에 한하여”를 “만을”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를 “퍼센트”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신청시”를 “신청 시”로, “사업계획서상”을 “사업계획서 상”으로 한다.

제12조의2 중 “의 규정에 의거”를 “에 따라”로, “경우에”를 “경우에는”으로, “제12조 내지 제15조에”를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한다.

제13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범위안”을 “범위 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20명이상”을 “20명 이상”으로, “6월 기간”을 “6개월”로,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3년이상”을 “3년 이상”으로 한다.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인이상”을 “20명 이상”으로, “6월의 범위안”을 “6개월 내”로, “1인당”을 “1명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3년이상”을 “3년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로, “기타”를 “그 밖에”로, “전문대학이상”을 “전문대학 이상”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범위안”을 “범위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2%”를 “2퍼센트”로, “범위안”을 “범위 안”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사업개시일”을 “사업시작일”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연도로부터”를 “연도부터”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 중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2조제5항제2호 내지 제5호”를 “영 제2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이내”를 각각 “내”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

단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70%이하”를 “70퍼센트 이하”로, “1만평”을 “3만3천 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각호의 1과”을 “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구내”를 “지구 내”로, “새로이”를 “새로”로 한다.

제19조제2항 본문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의한”을 “따른”으로, “30%”를 “3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신청시”를 “신청 시”로, “사업계획서상의”를 “사업계획서 상의”로, “10년이상”을 “10년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3조 내지 제15조”를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범위안”을 “범위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때”를 “경우”로, “1% 범위안”을 “1퍼센트 범위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때”를 “경우”로,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20조의2 중 “같은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때”를 “경우”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완납전”을 “완납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이내”를 “내”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기반시설 사업지원 등) 군수는 군내에 입주하는 국내·외국인의 투자사업 및 기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 본문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각호의 1과”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3억불이상 이거나”를 “3억달러 이상이거나”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12조 내지 제20조의2”를 “제12조부터 제20조의2까지”로, “때”를 “경우”로, “이를 도지사에게”를 “도지사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이를 예산에”를 “예산에”로, “계상”을 “반영”으로 한다.

제23조의1제1항 본문 중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각종 보조금”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업개시일”을 “사업시작일”로, “규칙에”를 “규칙으로”로, “기간내”를 “기간 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2년이내”를 “2년 내”로, “아니한 때”를 “않은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2년이내”를 “2년 내”로, “아니한 때”를 “않은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공장시설 등의”를 “공장시설 등의”로, “현저히”를 “뚜렷이”로,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지방세 징수”를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한다.

제24조 중 “공이크다고”를 “공이 크다고”로, “범위내”를 “범위 안”으로, “인사상”을 “인사 상”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4. (생략)</p> <p>5. “외국인 투자 환경개선 시설”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5항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p> <p>6. ~ 10. (생략)</p> <p>11. "물류시설"이라 함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사업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p> <p>12. "연구시설"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을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p> <p>13.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목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가. 공장시설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에 기계 또는 시설·장치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p> <p>나. 동일한 법인이 기존의 공장시설과 구분되는 회계상 별도로 계리될 수 있는 공장시설 또는 기계·시설·장치를 설치하는 경우</p>	<p>제2조(정의) -----            ---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 제2조 제7항-----.</p> <p>6. ~ 10. (현행과 같음)</p> <p>11.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따른 -----.</p> <p>12. -----            -----에 따른 -----.</p> <p>13. -----            ----- 각 목의 어느 하나-----.</p> <p>가. -----            ----- 새로 -----</p> <p>나. -----            ----- 계산-----</p>

현행	개정안
<p>다. 건축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을 인수하여 <u>건축법 제18조의 규정</u>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득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다만, 투자유치위원회는 건축공사의 진척에 따라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p> <p>14. (생략)</p> <p>15.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을 말한다.</p> <p>&lt;신설&gt;</p>	<p>다. ----- -----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 받아 ----- ----- ----- ----- -----.</p> <p>14. (현행과 같음)</p> <p>15. ----- 해당 ----- ----- ----- ----- ----- ----- ----- ----- ----- ----- -----.</p> <p>16.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p>
<p>제3조(투자유치위원회) 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u>10인</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생략)</p> <p>④ 위원회는 간사 <u>1인</u>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담당주사가 된다.</p> <p>⑤ (생략)</p> <p>1. ~ 3. (생략)</p> <p>4. <u>기타</u>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p> <p>⑥ <u>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u>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3조(투자유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10명</u> ----- -----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u>1명</u> ----- ----- -----.</p> <p>⑤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에</u> ----- ----- 회의에 부치는 -----</p> <p>⑥ <u>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u>은 규칙으로 정한다.</p>

현행	개정안
<p>제4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u>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제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수당 등은 「<u>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u>」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p>
<p>제5조(투자유치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2월말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u>당해연도 투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u></p> <p>② 제1항의 투자유치기본계획에는 <u>당해연도의 투자유치 목표, 투자유치 활동 및 지원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u></p>	<p>제5조(투자유치계획의 수립) ① --- ----- -- <u>해당</u>----- -----.</p> <p>② ----- <u>해당</u>----- -----.</p>
<p>제6조(투자유치진흥기금)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구성에 필요한 재원을 <u>매회계연도마다</u> 세출예산에 <u>계상하여 경상남도투자유치진흥기금</u>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u>의한다.</u></p> <p>②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u>다음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경상남도지사</u> (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u>기타</u>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③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 <u>용자대상, 용자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제6조(투자유치진흥기금) ① ----- ----- <u>제142조에 따라</u> ----- --- <u>회계연도마다</u> ----- <u>반영</u>----- ----- ----- <u>따른다.</u></p> <p>②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 <u>경우</u>-----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에</u> ----- -----</p> <p>③ -----<u>에 따른</u> --- ----- -----.</p>

현행	개정안
<p>제8조(외국인투자의 지원범위) ① 각종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는 <u>당해기업</u>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p> <p>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u>상당</u>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 투자 비율로 보지 아니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p> <p>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불 이상인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고도기술수반 사업 또는 산업지원 서비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u>새로이</u>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규모가 30명 이상인 경우</p> <p>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인 경우로서 기계,자동차,항공우주, 조선, 생명 공학산업 등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u>새로이</u>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p>	<p>제8조(외국인투자의 지원범위) ① --- ----- ----- <u>해당</u>----- ----- -----.</p> <p>② ----- ----- ----- ----- <u>해당</u>----- ----- -----.</p> <p>③ 제1항에 따라 ----- ----- <u>각 호의 어느 하나</u> -----<u>만을 말한다.</u></p> <p>1. -----<u>달러</u> ----- ----- ----- <u>새로</u> ----- -----</p> <p>2. -----<u>달러</u> ----- ----- ----- <u>새로</u> ----- -----</p>

현 행	개 정 안
<p>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인 경우로서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u>사업외의</u>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u>50명 이상인</u> 경우</p> <p>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 금액(전체 보조 사업별 국·도비를 포함한다)은 <u>당해</u> 외국인투자 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p>	<p>3. -----<u>달러</u> ----- ----- <u>사업 외의</u> ----- ----- ----- <u>50명 이상인</u> -----</p> <p>④ ----- ----- ----- <u>해당</u> ----- -----.</p>
<p>제9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u>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거창군세 감면조례」</u>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p>	<p>제9조(지방세 감면) ----- ----- <u>재산세는</u> ----- <u>「거창군세 감면조례」</u>로 -----.</p>
<p>제10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 및 <u>「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u>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p>	<p>제10조(금융지원) ----- ----- <u>「경상남도</u> <u>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u>로 ----- -----.</p>
<p>제11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들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및 <u>토지등을</u> 임대하는 경우 대부분 감면율은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1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 -----<u>에 따라</u> 외국인 <u>투자기업</u> 등에게 ----- ----- <u>토지 등을</u> ----- -----.</p>

현행	개정안
<p>제12조(입지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저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가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는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분양계약서 등에 의한 분양가의 차액에 한하여 지원하되 제조업인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p>	<p>제12조(입지지원) ① ----- ----- --- 범위 안에서 ----- ----- ----- ----- -----.</p> <p>② 제1항에 따라 ----- ----- ----- ----- ----- 따른 -----차액만을 ----- ----- 지식경제부장관이 ----- 따른 ----- -----.</p> <p>③ 제2항에 따른 ----- ----- 50퍼센트----- ----- ----- 없으면 ----- 신청 시 ----- 사업계획서 상의 ----- -----.</p>
<p>제12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제12조 내지 제15조에 규정된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p>	<p>제12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법 제14조의2에 따라 ----- ----- ----- ----- 경우에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 -----.</p>

현행	개정안
<p>제13조(고용보조금) ① 군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새로운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기업이 20명이상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6월 기간 내에서 초과 고용인원 1인당 월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의한 고용보조금 지급 기간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만 지원하되,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3년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p>	<p>제13조(고용보조금) ① ----- ----- ----- 범위 안----- -----에 따른 ----- -----.</p> <p>② 제1항에 따른 ----- ----- ----- 20명 이상----- ----- 6개월 ----- ----- 1명당 ----- -----.</p> <p>③ 제2항에 따른 ----- -----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 ----- ----- ----- 3년 이상 -----.</p>
<p>제14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보조금은 내국인을 20인이상 신규로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6월의 범위안에서 1인당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보조금 지급기간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기업등록 후 5년까지만 지원하되, 기업당 지원 총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p>	<p>제14조(교육훈련보조금)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 ----- 20명 이상 ----- ----- ----- 6개월 내에서 1명당 ----- -----.</p> <p>③ 제1항에 따른 ----- ----- -----에 따른 ----- ----- ----- 3년 이상 ----- -----.</p>



현행	개정안
<p>제15조의2(외국인 투자환경개선 지원)</p> <p>① (생략)</p> <p>② 제1항 <u>규정에 의하여</u>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에 지원하는 사업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립하는 <u>때</u>에 지원하는 사업비 및 운영비는 총비용의 50퍼센트 <u>이내</u></p> <p>2. 영 제2조제5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군수는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2억원 <u>이내</u></p>	<p>제15조의2(외국인 투자환경개선 지원)</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라 ----- ----- -----.</p> <p>1. ----- ----- <u>경우에</u> ----- <u>내</u></p> <p>2. 영 제2조제7항에 ----- ----- ----- ----- ----- <u>내</u></p>
<p>제18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p> <p>① 군수는 경상남도(이하"도"라한다)의 공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u>각호의</u>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p> <p>1. <u>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u> 조성된 <u>지방산업단지</u> 및 <u>농공단지</u></p> <p>2. (생략)</p>	<p>제18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p> <p>① ----- ----- ----- <u>각 호의</u> ----- ----- ----- <u>경우에는</u> ----- -----.</p> <p>1. 「<u>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u>」에 따라 ----- <u>일반산업단지</u> -----</p> <p>2.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②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지구 지정일 현재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분양실적이 <u>70%이하</u>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u>최소 1만평 이상</u>이어야 한다.</p> <p>③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u>각호의 1과 같다.</u></p> <p>1. (생략)</p> <p>2. 도내·외 기업이 지정 <u>지구내</u>에서 공장을 <u>새로</u>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p>	<p>② ----- ----- ----- <u>70퍼센트 이하</u>----- --- <u>3만3천 제곱미터</u> -----.</p> <p>③ ----- ----- <u>각 호의 어느 하나와</u> -----.</p> <p>1. (현행과 같음)</p> <p>2. ----- <u>지구 내에서</u> --- <u>새로</u>-----</p>
<p>제19조(국내기업의 지원) ① (생략)</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에게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 안에서 분양가의 <u>30%까지</u>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u>없는 한</u> 보조금 <u>신청시</u> 제출한 <u>사업계획서상의</u> 사업을 <u>10년 이상</u> 영위하여야 한다.</p> <p>③ <u>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u> 지원대상 기업에게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및 시설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u>제13조 내지 제15조</u>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9조(국내기업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에 따라</u> ----- ----- ----- <u>따른</u> ----- --- <u>30퍼센트</u>----- ----- ----- --- <u>없으면</u> --- <u>신청 시</u> --- <u>사업계획서 상의</u> --- <u>10년 이상</u> -----.</p> <p>③ --- <u>제1항에 따른</u> ----- ----- ----- ----- ----- <u>제13조부터 제15조까지</u> -----.</p>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이전보조금) ① 도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거나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u>범위안</u>에서 이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u>규정에 의하여</u>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 이전가액의 <u>1% 범위안</u>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1항의 <u>규정에 의하여</u> 공장시설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무용 건물을 취득 또는 임차하여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때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초과인원 <u>1인당</u> 30만원을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p>	<p>제20조(이전보조금) ① ----- ----- ----- ----- <u>범위 안</u> ----- -----.</p> <p>② 제1항에 <u>따라</u> ----- ----- <u>경우</u>에는 ----- ----- <u>1퍼센트 범위 안에서</u> ----- -----.</p> <p>③ 제1항에 <u>따라</u> ----- ----- ----- ----- <u>경우</u>에는 ----- ----- ----- <u>1명당</u> ----- -----.</p>
<p>제20조의2(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에 대한 지원특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 <u>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u> <u>규정에</u> <u>의하여</u> 수도권 기업이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 기준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할 때에는 50억원의 범위 안에서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제20조의2(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에 대한 지원특례) ----- ----- ----- <u>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u> <u>따라</u> -- ----- ----- ----- <u>경우</u>에는 ----- ----- -----.</p>

현 행	개 정 안
<p>제21조(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특례)</p> <p>① 군수는 농공단지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분양대금의 <u>완납전에</u> 분양계약을 해지하여 다시 분양하는 토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감면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가격을 감면할 수 있는 범위는 토지분양대금의 상황에 따른 금융비용 <u>이내</u>에서 결정할 수 있고, 분양가격 감면에 따른 부족사업비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p> <p>&lt;신 설&gt;</p>	<p>제21조(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특례)</p> <p>① ----- ----- <u>완납 전에</u> ---- ----- ----- -----.</p> <p>② 제1항에 따라 ----- ----- ----- <u>내</u> ----- -----.</p> <p>제21조의2(기반시설 사업지원 등) 군수는 <u>군내에 입주하는 국내·외국인의 투자사업 및 기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u></p>
<p>제22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기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p> <p>1. 외국인기업의 투자금액이 <u>미화 3억불이상</u> 이거나 1일 상시고용 규모가 1,500명 이상인 경우</p> <p>2. (생략)</p>	<p>제22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라 ----- ----- <u>각 호의 어느 하나와</u> ----.</p> <p>1. ----- <u>3억달러 이상이거나</u> ----- -----</p> <p>2.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23조(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 ① 군수는 제12조 내지 제20조의2의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도비 등의 자금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자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p>	<p>제23조(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 ① ----- 제12조부터 제20조의2까지의 -----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제2항에 따른 ----- 예산에 반영-----.</p>
<p>제23조의1(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 부터 규칙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li> <li>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li> <li>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할 때</li> <li>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li> <li>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때</li> </ol>	<p>제23조의1(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 각종 보조금을 ----- 각호의 어느 하나에 ----- 경우에는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사업시작일 --- 규칙으로 ----- 기간 내에 ---</li> <li>2. ---, 그 밖의 ----- 경우</li> <li>3. ----- 경우</li> <li>4. ----- 2년 내에 ----- 않은 경우</li> <li>5. ----- 2년 내에 ----- 않은 경우</li> </ol>

현행	개정안
<p>6. <u>공장시설등의</u> 공사가 예정 공정에 <u>현저히</u>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p> <p>7. (생략)</p> <p>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u>지방세 징수의</u>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p> <p>제24조(투자유치 성공 보상) 군수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에 기여한 <u>공이크다고</u>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u>범위내에서</u>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u>인사상</u> 우대할 수 있다.</p>	<p>6. <u>공장시설 등의</u> ----- <u>뚜렷이</u> ----- ----- <u>경우</u></p> <p>7. (현행과 같음)</p> <p>② ----- 제1항에 따라----- ----- <u>지방세 체납처분의</u> ----- -----.</p> <p>제24조(투자유치 성공 보상) ----- ----- <u>공이 크다고</u> ----- ----- <u>범위 내에서</u> ----- ----- <u>인사 상</u> -----.</p>

##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8 ~ 42
----------	-----------

제출연월일	2008. 10. 2.
제 출 자	거창군수

### 1. 개정이유

광역친환경농업지구구성사업의 시행 등 각종 사업예산 투입이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전체적인 육성범위와 지원규정 등을 명확히 하여 우리 군 친환경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당초 12조의 내용을 5장 32조로 전면 개정함

나.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 지원대상, 절차,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 농업환경개선 시책 및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다.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부터 제24조까지)

-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위원임기, 위원장 직무, 위원해촉, 회의, 간사 및 회의록, 심의사항 처리, 의견청취 및 공청회 개최, 수당에 관한 사항

라. 광역친환경농업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 사업단의 구성과 기능, 광역단지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범위 및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과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의 평가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0조부터 제31조까지)

-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의 평가와 실천실적 우수자에 대한 시상에 관한 사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 제7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그 밖에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2) 입법예고(2008. 8. 20. ~ 9. 9.) 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사항 없음

##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군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말하는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산물의 적용범위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조 및 제16조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인증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생산되어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농산물을 말한다.
4.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5. “광역단지”란 1,000헥타르 이상의 농경지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 가공, 판매 등의 활동을 함께하기 위하여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가 조직한 영농단지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인의 책무) 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 촉진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는 군의 친환경농업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그 회원 및 농업인들에게 교육·훈련·기술개발·영농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친환경농업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장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제6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① 군수는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향
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
5. 친환경농업단지 육성방안
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7. 친환경농업인의 소득증대 방안
8. 실천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9.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실천계획을 수립하려면 제14조에 따른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실천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단지 육성
2. 친환경농업실천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
3.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 수수료
4.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의 활성화
5. 친환경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사항
6.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의 추진에 따른 필요사항
7. 인증농산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산량 감소에 대한 소득보전이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에 따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연구모임 등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유통사업자

제9조(지원절차) ①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려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연구모임 및 유통사업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0조(대상자 선정기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자 선정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및 유통현황, 영농규모
2.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3. 친환경농업 발전 기여도
4. 친환경농업 실천의지
5. 그 밖에 개별 사업규정에 따른 적합성 등

제11조(농업환경개선)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업환경관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농지의 개량
2. 농업용수 오염방지 및 개발
3. 농업환경개선을 위한 토양검정
4. 그 밖에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토양 및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교육)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 친환경농업의 생산·유통에 관한 교육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 제3장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설치·운영

제13조(설치)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의 수립·변경 및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증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된 각종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친환경농업 관련 각종 자재공급 및 인증확대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친환경농산물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간의 업무연계 및 협력을 지원한다.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농업지원과장, 원예특작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농산물품질관리원 거창출장소장
3. 농업 관련 유관기관·단체의 대표자
4. 친환경농업 관련 민간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자
5. 그 밖에 친환경농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제1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해촉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친환경농업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위원회 심의내용 및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심의사항의 처리)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 (공청회 등의 개최)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수당 등은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제4장 광역친환경농업사업단 운영

제25조(광역친환경농업사업단 구성) ①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거창군 광역친환경농업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② 사업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관리를 위한 지역 농업인 단체의 구성원 수 등 비중이 큰 단체의 장이 된다.

④ 부단장은 사업단 위원 중 호선한다.

⑤ 사업단의 위원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품목별 농업인단체의 대표, 지역대표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

제26조(사업단의 기능)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광역단지 육성계획 수립·변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 광역단지 사업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광역단지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 집행 등 중요사항의 조정·결정
4. 사업단의 시설·장비의 효율적인 활용 및 유지·관리
5. 각종 친환경농자재의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
6. 광역단지 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7. 광역단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 및 소비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업단과 관련된 각종 사안에 관한 사항

제27조(지원사업) 군수는 광역단지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속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력증진사업
2.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각종 연구·개발사업
3. 안전농산물 생산 및 원활한 유통을 위한 지원사업
4. 신기술 개발 및 보급사업
5.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6. 그 밖에 광역단지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8조(사업단장의 직무) ①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사업단 업무를 통할한다.

② 사업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추진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사업단 운영) ① 사업단장은 광역단지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방침을 제정하여 이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회의소집 및 의결방법
2.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각종 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운영방법
3. 각종 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확보

② 광역단지의 운영방침을 제정하려면 사업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③ 사업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단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5장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및 사업평가

제30조(친환경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 군수는 인증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 인증농산물의 품목별 협의체 구성과 브랜드화 및 마케팅
2. 인증농산물의 포장재 개발지원

3. 인증농산물의 직거래 지원
4. 인증농산물의 학교급식 및 대규모 소비처 확보 지원
5. 인증농산물의 홍보물 설치 및 각종 홍보매체 활용지원
6. 인증농산물의 안정성 확보 및 상장경매 유도 지원

제31조(사업의 평가 및 시상)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사업 결과를 연 1회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농업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유통실적
2. 친환경농업 육성추진 관심도
3. 화학비료·농약 감축 실적 및 퇴비·유기질비료 등 친환경농자재 사용실적
4. 친환경농산물 브랜드화 및 마케팅 전략
5. 그 밖에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친환경농업 실천 실적이 우수한 농업인이나 마을, 읍면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